

한·미 FTA 협상이 보건복지 분야에 미치는 영향



글·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FTA 제2차 협상이 양국의 뚜렷한 입장차로 인해 난항을 겪은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며 의약품·의료기기 부문 협상 자체에 응하지 않았고 이후의 협상 일정에도 불참했다.

이에 따라 이 분야의 2차 협상을 아무 논의도 못한 채 종료된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매우 크다.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국민 부담을 낮추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엄연한 국가정책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 미국 제약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압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가간 관세를 철폐해 수출 증가를 끌어낸다는 정도로 인식되고 있는 자유 무역협정이 국가의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예로 들었지만, 비단 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한미 FTA 협상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든다.

따라서 현재 논란이 되고있는 한미 FTA 협상의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FTA 체결이 우리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첫째, 앞서 예를 들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가장 우려되는 분야다.

미국 측 협상단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더 이상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의 소지는 남아 있다.

일단 입법예고기간이 당초 예상되던 20일에서 60일로 연장되었으며,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하는 대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의 참여와 특허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고 한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 미국 제약회사가 참여할 경우 약가 결정에 미국의 입김이 거세질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특허기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내 소비자들이 값싼 제네릭 의약품을 접할 기회는 늦춰지게 된다. 결국 미국 제약회사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결과로 이어지고 환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특허권 연장을 보장해준 호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지적에 대해 미국 측 협상단과 어떠한 이면 합의도 없었다고 밝혔지만 협의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후 협상 일정을 의식해 지나치게 합의를 서둘렀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조건을 일정 부분 수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보험 분야도 우려가 적지 않다.

현재 미국은 보험상품에 대한 모든 규제를 철폐하고 자유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을 개방할 경우 민간의료상품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며 민간의료보험의 난립으로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공적 의료보험제도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상위계층이 좀 더 많은 부담금과 높은 보장내용의 민간의료보험으로 대거 이동할 경우, 그만큼 건강보험 재정은 취약해지고 상위계층을 위한 민간보험과 저소득층을 위한 공적보험체제로 의료보험이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마지막으로 한미 FTA 협상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평가받고 있는 투자자 - 정부 중재제도가 있다.

이는 정부나 공공기관을 일반 기업이 제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법이나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대표적인 예가 세계적인 운송업체인 UPS사가 캐나다 우체국의 전국 네트워크가 반경쟁적이라는 이유로 제소한 사례와 지하수를 오염시켜 놓고도 도리어 멕시코 정부의 그린벨트 지정에 대해 제소한 미국의 메탈 클래드사가 멕시코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은 사례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곧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정책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미국 기업이 얼마든지 국가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언급한 분야 외에도 식품안전제도 등 국민건강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미국의 공격적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아직 광우병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허용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실상은 이러한데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가 의료 부분의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마치 보건의료분야가 한미 FTA 협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

지금이라도 한미 FTA가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연구와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지만, 우리 측은 협정체결에만 급급해 지나치게 협상을 서두르고 있으며 정보공개를 바라는 여론을 묵살하고 있다.

한미 FTA 체결은 당위명제가 아니다. 최대한 우리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협상을 하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굳이 서둘러 진행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먹거리와 의료 등 국민생활과 바로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한미 FTA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 여론과 각계 전문가들의 우려에 귀 기울이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KHA**